

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10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1. 16

다. 상 정 일 자 : 2000. 11. 16

(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재무과장 김 종 철

나. 개정사유

- 행정규세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보증채무관리와 관련된 규제사항을 완화 개선코자함.

다. 주요내용

- 지금까지는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경우 군수는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보증채무 이행설차를 밟도록 하였음.
- 그러나, 앞으로는 “부득이하다고 인정할때”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“청구서를 받은후 1개월 이내에 관계 공무원이 채무의 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의 세부 상황 및 재정능력상 명백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”로 하고자 함(안 제7조 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 위원회의 연구 용역결과 제시된 기초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모델을 준용하여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 써,

- 보증 채무 부담 이행을 받고자 할시에는 주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사유가 인정될때에 한해서 이행절차를 수행토록 되어 있어 채권자의 권리가 장기간 불확정될 개연성이 있으므로,
- 주 채무자의 변제불능사유서가 접수된 후 1개월이내에 관계 공무원이 주 채무자의 재무상황 및 재정능력을 확인하여 변제능력이 없음이 확인 될 때에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도록 한 것임.
- 본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의 입법 취지인 공익 목적을 위한 사업의 활성화가 증대 될것으로 기대되며,
-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치는등 개정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중 “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”을 “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의 재무상황 및 재정능력상 명백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보증채무의 이행) ① (생략)</p> <p>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결자를 밝는다.</p>	<p>제7조(보증채무의 이행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 - - - - 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의 재무상황 및 재정능력상 명백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